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3년 9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세무 및 법률정보

- 2023 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2024 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조세지출예산서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fss.or.kr]

주요내용

주요내용

□(분석 결과)상장법인 2,511사의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新 외부감사법 시행('19회계연도) 이후 97%대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22년) 97.9%

◦강조사항 기재 건수는 큰 폭 감소(△375건)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이 감소(△291건)한데 주로 기인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 : ('20년) 369건 → ('21년) 341건 → ('22년) 50건

◦또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는 85사*로 이 중 소규모 기업(자산 1천억 미만)이 71.8%(61사)를 차지하였습니다.

* 적정의견 + 계속기업 불확실성 : ('20년) 105사 → ('21년) 92사 → ('22년) 85사

자산규모별(85사) : 1천억 미만(61사), 1천억~5천억(15사), 5천억~2조(7사), 2조 이상(2사)

□(시사점)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20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우려와 달리 새로운 회계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20년) 71사 → ('21년) 68사 → ('22년) 53사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검토→감사) 등

◦전기재무제표 수정 건이 48건(13.1%)으로 여전한 바, 기업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보고 이용자들은 의사결정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회사의 위험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견이 적정임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한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의 개선이 없는 경우 향후 비적정의견을 받거나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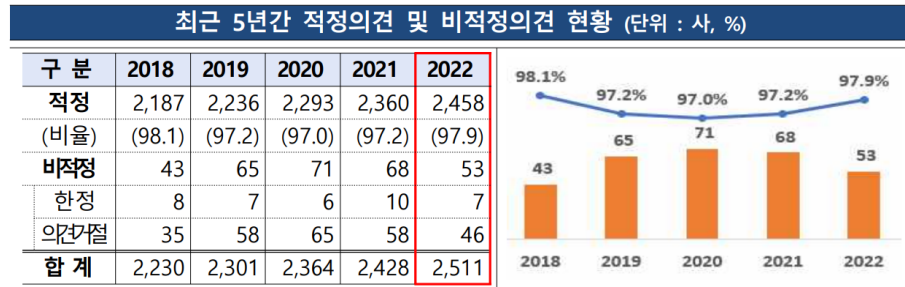
분석결과

I. 분석 결과

- ◆(분석대상)상장법인 2,511사*의 FY2022 감사보고서를 분석
- *23.3월말 주권상장법인 2,589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78사 제외
- 유가증권 796사(31.7%), 코스닥 1,584사(63.1%), 코넥스 131사(5.2%)
- 12월 결산 2,474사(98.5%), 연결재무제표 작성 1,943사(77.4%)

1. 감사의견 현황

- (적정의견)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新 외부감사법 시행('19회계연도) 이후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97%대) 유지
- *적정의견 비율: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22년) 97.9%
- (비적정의견) 상장법인 53사가 비적정의견으로 전기(68사) 대비 15사 감소
- 한정의견 7사, 의견거절* 46사로 의견거절은 '20년을 정점(65사)으로 감소 추세*
- * ('20년) 65사 → ('21년) 58사 → ('22년) 46사
- 비적정의견*은 감사범위제한(45사), 계속기업 불확실성(26사)이 주요 원인
- *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 (감사수임 유형별 분포)감사인 지정 법인의 적정의견 비율(96.6%)은 자유수임(99.2%)보다 2.6%p 낮으며, 차이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 *자유수임-지정:('19년)15.1%p→('20년)6.2%p→('21년)3.5%p→('22년)2.6%p
- 이는 재무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152사, 적정 99.7%) 비중*이 계속 높아진 것에 기인
- *주기적 지정 비중 : ('20년)28.9%→('21년)41.8%→('22년)46.7%(+4.9%p)

□(자산규모별 분포)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에 비례하였으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음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비적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임

| 구 분 | 1천억원 미만 | | 1천억 ~5천억원 | | 5천억 ~2조원 | | 2조원 이상 | | 합 계 | |
|------|---------|-------|-----------|-------|----------|-------|--------|-------|-------|-------|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
| 적정 | 890 | 95.6 | 1,053 | 99.1 | 318 | 99.4 | 197 | 100.0 | 2,458 | 97.9 |
| 한정 | 5 | 0.5 | 2 | 0.2 | 0 | - | 0 | 0.0 | 7 | 0.3 |
| 의견거절 | 36 | 3.9 | 8 | 0.8 | 2 | 0.6 | 0 | 0.0 | 46 | 1.8 |
| 합 계 | 931 | 100.0 | 1,063 | 100.0 | 320 | 100.0 | 197 | 100.0 | 2,511 | 100.0 |

2.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강조사항)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사(11.5%)로, 전기(572사, 23.6%) 대비 크게(△283사, △12.0%p) 감소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코로나19 영향 강조사항 기재가 전기(전기 341건, 46.0%) 대비 크게 감소*(△291건, △32.4%p)한 것이 주요 원인

* 전체 감소(△375건)의 많은 부분(77.6%)을 코로나19 영향 강조사항이 차지

◦그 외 전기 재무제표 수정, 중요한 거래 관련 강조사항의 감소가 있었고, 합병 등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강조사항은 소폭 증가

| 항목별 구분 | 2021 회계연도 | 2022 회계연도 | 증 감 |
|-------------------------------|------------|------------|-------------|
|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 78 | 92 | 14 |
| 소송 등 영업환경의 중대한 불확실성 | 375 | 85 | △290 |
| 코로나 19 영향 | 341 | 50 | △291 |
| 회계 변경 | 99 | 78 | △21 |
| 전기 재무제표 수정 | 81 | 48 | △33 |
| 중요한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BS일 후 사건 등) | 105 | 64 | △41 |
| 기타(신규상장, 관리종목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 85 | 48 | △37 |
| 강조사항 합계 | 742 | 367 | △375 |
| 기재기업 수 | 572 | 289 | △283 |

□(계속기업 불확실성)적정의견 법인(2,458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상장법인은 85사로 전기(92사) 대비 7사 감소*

* ('20년) 105사→('21년) 92사→('22년) 85사

자산규모별(85사): 1천억 미만(61사), 1천억~5천억(15사), 5천억~2조(7사), 2조 이상(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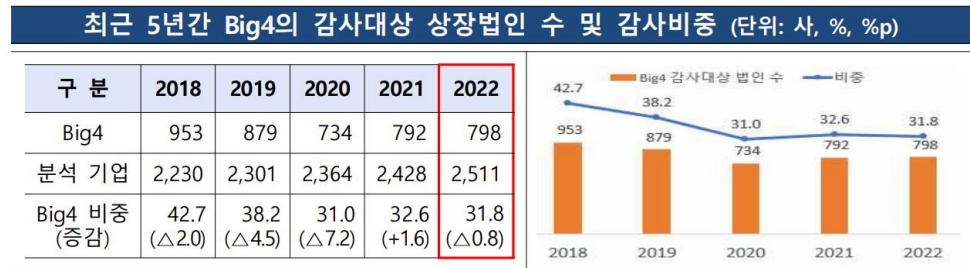
◦'21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92사)의 차기 상장폐지·비적정의견 비율은 12.0%로 미기재 법인(1.9%)보다 약 6배 높았음

3. 감사인 분포

□(회계법인 규모별)4대 회계법인(Big4, 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20회계연도 이후 31~32%대 수준을 유지

*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 : ('20년) 31.0% → ('21년) 32.6% → ('22년) 31.8%

◦중견회계법인(Top10 중 하위 6사)의 감사 비중(32.3%)도 소폭(+1.1%p) 증가



□(감사대상 자산규모별)Big4의 자산 2조원 이상, 5천억~2조원 미만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각각 92.4%, 57.8%로 Big4 비중이 높음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의 Non-Big4 비중*은 78.4%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4 비중: ('20년)79.6%→('21년)78.0%→('22년)78.4%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 직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1,510사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은 2.5%(38사)로 전기(445사 중 비적정 4사, 0.9%) 대비 2.8배 증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증가(+1,065사) 및 인증수준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비적정의견 38사 중 부적정의견은 20사, 의견거절은 18사로 이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법인은 21사

* 부적정의견 : 평가기준일 현재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의견거절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감사범위 제한)

시사점

II. 시사점

1. 비적정의견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 비율*은 新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97%대)을 유지하고 있으며,

-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20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 추세**
- * 적정의견 비율 : ('20년) 97.0% → ('21년) 97.2% → ('22년) 97.9%
- ** 비적정의견(한정, 의견거절) 수 : ('20년) 71사 → ('21년) 68사 → ('22년) 53사

- 엄격한 감사환경을 조성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 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회계개혁 제도의 안착을 위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마련된 바, 금감원은 안정적 운영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계속 지원할 예정

상장법인도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공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필요

* (보도자료, 2023.6.12.)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2. 재무제표 수정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예정

◦'22회계연도 강조사항 기재가 큰 폭의 감소*(△375건)가 있었으나, 전기재무제표 수정 기재 건은 48건(13.1%)으로 여전히 많은 편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 기재 감소가 291건으로 77.6%를 차지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수정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 등을 통해 엄정 조치 예정

회사는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할 필요

3.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내용에 유의 필요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이 다음 해에 감사의견 변형,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기재 법인에 비해 높았음
 * ('18년) 85사→('19년) 84사→('20년) 105사→('21년) 92사→('22년) 85사
 자산규모별(85사): 1천억 미만(61사), 1천억~5천억(15사), 5천억~2조(7사), 2조 이상(2사)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중·소규모 상장법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향후 감사의견 변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에 특히 주의 필요

4. 상장법인 규모에 따른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분포가 양분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Big4) 감사비중은 92.4%이며,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의 Non-Big4 비중은 78.4%로 자산규모에 따른 회계법인 분포*가 양분

* 자산 2조원 이상 Big4 비중 : ('20년)94.7% → ('21년)94.2% → ('22년)92.4%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4 비중: ('20년)79.6% → ('21년)78.0% → ('22년)78.4%

◦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제고, 감사품질 경쟁 촉진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 중

 회계법인은 가격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외부감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
 * (보도자료, 2023.6.12.)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붙임1) 참고 통계자료

1. 분석대상 상장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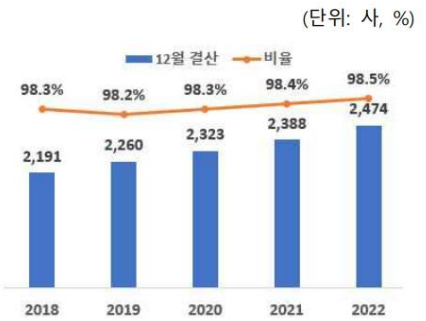
가. 시장별 분포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유가증권 | 769 | 775 | 778 | 792 | 796 |
| 코스닥 | 1,311 | 1,379 | 1,447 | 1,508 | 1,584 |
| 코넥스 | 150 | 147 | 139 | 128 | 131 |
| 합 계 | 2,230 | 2,301 | 2,364 | 2,428 | 2,5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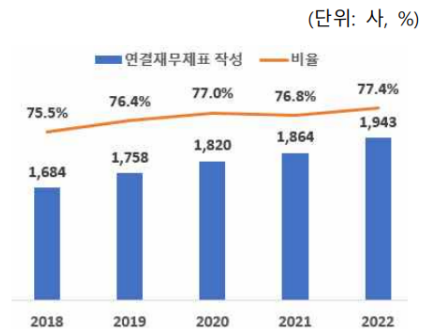
나. 결산일별 분포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2월 (비율) | 2,191 (98.3) | 2,260 (98.2) | 2,323 (98.3) | 2,388 (98.4) | 2,474 (98.5) |
| 3월 | 20 | 20 | 19 | 19 | 16 |
| 6월 | 11 | 13 | 14 | 12 | 13 |
| 기타 | 8 | 8 | 8 | 9 | 8 |
| 합 계 | 2,230 | 2,301 | 2,364 | 2,428 | 2,511 |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연결 (비율) | 1,684 (75.5) | 1,758 (76.4) | 1,820 (77.0) | 1,864 (76.8) | 1,943 (77.4) |
| 개별 | 546 | 543 | 544 | 564 | 568 |
| 합 계 | 2,230 | 2,301 | 2,364 | 2,428 | 2,511 |



2. 감사의견

가. 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적정 | 2,187 | 2,236 | 2,293 | 2,360 | 2,458 |
| 한정 | 8 | 7 | 6 | 10 | 7 |
| 부적정 | - | - | - | - | - |
| 의견거절 | 35 | 58 | 65 | 58 | 46 |
| 합계 | 2,230 | 2,301 | 2,364 | 2,428 | 2,511 |



나. 시장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 구분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
|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 유가증권 | 763 | 6 | 768 | 7 | 768 | 10 | 785 | 7 | 786 | 10 |
| 코스닥 | 1,280 | 31 | 1,330 | 49 | 1,397 | 50 | 1,463 | 45 | 1,551 | 33 |
| 코넥스 | 144 | 6 | 138 | 9 | 128 | 11 | 112 | 16 | 121 | 10 |
| 합계 | 2,187 | 43 | 2,236 | 65 | 2,293 | 71 | 2,360 | 68 | 2,458 | 53 |

다. 감사수입 유형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 구분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
|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 자유수입 | 1,980 | 18 | 2,119 | 41 | 1,581 | 16 | 1,379 | 18 | 1,252 | 10 |
| 감사인지정 | 207 | 25 | 117 | 24 | 712 | 55 | 981 | 50 | 1,206 | 43 |
| 합계 | 2,187 | 43 | 2,236 | 65 | 2,293 | 71 | 2,360 | 68 | 2,458 | 53 |

라. 자산규모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 구분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
|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 2조원 이상 | 209 | 1 | 168 | - | 171 | - | 190 | - | 197 | - |
| 5천억 ~ 2조원 | 307 | - | 246 | - | 268 | 2 | 295 | 1 | 318 | 2 |
| 1천억 ~ 5천억원 | 874 | 16 | 943 | 12 | 970 | 12 | 1,020 | 8 | 1,053 | 10 |
| 1천억원 미만 | 797 | 26 | 879 | 53 | 884 | 57 | 855 | 59 | 890 | 41 |
| 합계 | 2,187 | 43 | 2,236 | 65 | 2,293 | 71 | 2,360 | 68 | 2,458 | 53 |

(붙임2) 감사보고서의 개요

1.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한까지 회사·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함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기한 |
|---------------------|-------------------|
| 회사 | 정기주주총회 1주 전 |
|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면,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新외감법 §23)

2.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가. 감사의견

□ (종류)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

| 구 분 | 적정의견 | 한정의견 |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
|--|-----------------|-----------------|------------------------------------|-----------------|
| □ 감사범위 제한 .경미 .중요 .특히 중요 | ○ | ○ ²⁾ | | ○ ³⁾ |
| □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경미 .중요 .특히 중요 | ○ | ○ ²⁾ | ○ ³⁾ | |
| □ 계속기업 가정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 부적절하게 공시 .타당하지 않음 | ○ ¹⁾ | ○ ²⁾ | ○ ³⁾ ○ ⁴⁾ | |

주: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감사기준서 570 문단 22)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감사기준서 705 문단 7,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감사기준서 705 문단 8~9,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사기준서 570 문단 21)

- ①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 ② (한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
- ③ (부적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표명하는 의견
- ④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나.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여,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

* (예) 회계변경, 중요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대한 불확실성(소송 등) 등

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고 계속기업 가정이 유효한 경우 기업은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이 있을 때 기업은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별도 단락에 기재

라.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정부는 8.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하고, 9.1.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개정안 대비 변동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 현행(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유지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조세지출예산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조세지출예산서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2023년 예산 400.5조원 대비 △33.1조원 감소한 367.4조원으로 편성됨.

주요 세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2023년 예산 대비 △6.0조원 감소 예상
 - 자산시장 불확실성으로 양도소득세 감소,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로 근로소득세 소폭 증가
 - 법인세: 2023년 예산 대비 △27.3조원 감소 예상
 - 2023년 기업실적 둔화
 - 부가가치세: 2023년 예산 대비 △1.8조원 감소 예상
 - 소비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는 증가
- 정부가 9.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¹'에 따르면, 연도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²은 다음과 같음

*1.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실적과 전망을 집계, 분석한 자료
*2.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 '23년 국세감면액은 69.5조원(감면율: 13.9%)으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년 대비 6.0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 '24년 국세감면액은 77.1조원(감면율: 16.3%)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3년 대비 7.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사실관계)

(질의1) '22년 청년을 신규 채용한 질의법인은 향후에도 고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나, 청년 고용유지가 불확실한 상황

(질의2) '21년 청년 및 청년외(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후, '22년 전체 고용은 유지하였으나 청년 고용이 감소

(질의3) '21년 청년외 5명을 신규 채용하여 공제를 적용받은 후 '22년 청년 및 청년외 고용이 각각 2명씩 감소

(질의4) '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은 후 '20년 고용이 감소하여 사후관리를 유예 받고, '21년에 '20년 대비 고용이 감소

(질문요지)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공제(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증대 기업이 동법동조항 제2호의 공제(일반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일반공제 선택 적용 불가

<2안> 일반공제 선택 적용 가능

(질의2)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 잔여 기간에 대해 일반공제액 적용

<2안> 잔여공제 불가

(질의3) 일반공제만 신청하여 적용 받은 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계산방법

- <1안>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액 추가납부
- <2안>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대해서도 일반공제액 추가납부

(질의4) '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20년 고용감소로 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유예 받았으나, '21년에 '20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

- <1안> '21년 고용감소 인원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계산
- <2안> '20년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회신)

「질의2」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하고 「질의1」, 「질의3」 및 「질의4」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함.

-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90, 2023.09.0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
- 공공기관운영법 §17조에 따라 예산, 운영계획, 재무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음
-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임이사에게 활동비(매월 지급) 및 회의참석수당(이사회 참석 시 지급)(이하 "쟁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의 지급 근거는 질의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

(질문요지)

-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쟁점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12조(5)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12조(3)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07.25)

(질의내용)

- (질의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 <1안> 인건비(법인령§19(3)) 또는 그 밖의 손비(법인령§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 (질의2)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자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안> 인건비(법인령§19(3)) 또는 그 밖의 손비(법인령§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 (질의3)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 <1안> 자회사 임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시점
 - <2안> 자회사 임원의 근로기간(RSU 요건 기간)에 안분
- (질의4) 자회사의 손금산입금액
 - <1안> 질의법인이 자회사 임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시점의 주식 시가 상당액
 - <2안> 자회사가 질의법인에게 실제 보전한 금액(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

(회신)

(질의1),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제1안이, (질의4)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 국외에서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조인트벤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판단기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2, 2023.06.0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동수주한 공사 수행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구성하여 「JV of A, B, C」 명의로 사업용 금융계좌를 운용할 때 공동수주한 구성원 (예: 내국법인 C)이 그 금융계좌를 본인이 공동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 공동수주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조인트벤처를 구성하고 조인트벤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경우, 당해 해외금융계좌가 내국법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공동명의계좌이거나 내국법인이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2호의 공동명의계좌는 2명 이상의 명의인 간에 공동명의계좌 개설이라는 의사의 합치 하에 개설국 금융기관의 공동명의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 2명 이상의 명의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계좌를 의미함. 따라서, 공동명의계좌 여부는 계좌 개설 약정, 공동명의 계좌 개설 절차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본 사안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적 소유자 여부는 관련 소재국 법령 및 약정 등을 기초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본 사안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업 무 소 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
| 발행인 | 한울회계법인 |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